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45호 2017. 2. 27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 및
지형도면 고시 -----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3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- 18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02. 24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11-1 외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02. 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- 19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2. 27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결정취지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
2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-64번지
3. 면적 또는 규모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로	1	54	10	국지도로	126	가좌동 556-54 (대로2-32)	교통광장	일반도로	-	-	-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소로1-5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로 신설 • 폭원(B) = 10m, 연장(L) = 126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

4. 지형도면 : 게재생략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,
<http://luris.mltm.go.kr/>열람 가능)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- 320호

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. 2. 27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
 - 근거법령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되어 2016. 9. 1.자 제정·시행
 -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제정·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

2. 주요내용

-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·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
 - 위원회 명칭 변경(부동산평가위원회⇒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)
 - 위원회의 근거 법령 조항 변경
 - 법,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정비
 -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3. 20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토지정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○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제출처

- 주소 : (우)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, 서구청 제2청사)
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
- 전화번호 : 032-560-4843 (FAX 560-2786)

4. 참고사항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」 전부 개정조례(안)